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635

발의연월일: 2023. 3. 15.

발 의 자:김미애·성일종·이종성

임이자 • 배현진 • 이헌승

조은희 • 박수영 • 한무경

金炳旭・장동혁・조정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·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필적·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,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 를 받을 수 없게 됨.

영국·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 보를 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·읍·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,

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,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,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·읍·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(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3(출생사실의 통보)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란 한다)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구축·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성명
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 - 1) 주민등록번호
 - 2) 외국인등록번호(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
 - 3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[1) 또는 2)의 사항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]

- 2. 출생자의 성별, 수(數) 및 출생 연월일시
- 3.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정보의 통보,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·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4(출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) ① 제44조의3제1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한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제44 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 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해당 출생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.
 - 1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, 출생신고 최고, 출생자의 성·본·이름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

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4조의3(출생사실의 통보) ①
	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
	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란 한
	다)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
	출생이 있었을 경우 출생 후 14
	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시・읍・면의 장에게 통보하여
	야 한다.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
	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
	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
	적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
	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
	원에 위탁하여 구축·운영하는
	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
	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
	<u>다.</u>
	<u>1.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</u>
	목의 사항
	<u>가. 성명</u>
	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사항
	<u>1) 주민등록번호</u>
	2) 외국인등록번호(모가 외
	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

3)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 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[1) 또는 2)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]

- 2. 출생자의 성별, 수(數) 및 출생 연월일시
- 3.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정보의 통보,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4(출생신고의 확인·최
고 및 직권 출생 기록) ① 제44
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
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1
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출생
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
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 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도 록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

<신 설>

반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46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. ③ 시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기록하여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후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.

- 1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 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,

출생신고 최고, 출생자의 성· 본·이름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